

1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2년 11월 18일
- 발의의원 : 김재용, 이태손, 하병문, 조경구, 권기훈, 박종필,
김정옥, 하중환, 김태우, 이동욱, 류종우 의원
-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2일
- 상정일자 :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2022년 12월 16일), 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재용 의원)

-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권장 대상에 50인 이상 사업장을 추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업무처리 매뉴얼 배포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아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구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 대상에 50명 이상 사업장 추가(안 제3조 제2항)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3)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제관)

□ 적법성 여부

-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고자 ‘50명 이상 사업장’¹⁾ 권장 대상 추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20퍼센트 의무구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업무매뉴얼 작성·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지역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대구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자치사무범위 내에서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 대구시 고용인원별 사업장 현황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및 市 빅데이터과, 기준 : 2020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계	283,033	1,010,557
30명 미만	279,184	651,316
30-49명	1,675	63,133
50-99명	1,415	97,428
100-299명	627	97,946
300이상	132	100,734

* 30인 이상 사업체 수 : 3,849개, 50인 이상 사업체 수 : 2,174개

** 100인 이상 사업체 수 : 759개

□ 주요내용

- 안 제3조(시장의 책무)는 현행 조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권장할 대상으로 대구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으로 하고 있는데 더하여, 민간을 포괄한 '50명 이상 사업장'을 추가하였음.
 - 상위법인 「판로지원법」에서는 주요 의무대상을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 하고 있어 민간을 포함한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권장 근거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5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권장·협조 요청 등을 규정하여 별다른 의무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조례로 규정하는 데 별다른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50명 이상 사업장'의 표현이 조례 취지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는 되나, 이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같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1항은 시장이 중소기업자의 기술개발제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이들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특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였음.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 제13조에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 조치 요구의 근거를 두고

있고, 구매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에서 중소기업제품 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음. 조례에서는 이를 한층 강화하여 구매 비율을 20퍼센트로 정하고 의무 구매토록 한 것임.

- 안 제4조의2 제2항과 제3항은 시장이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해 시 산하 출연기관 등과 5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제2항),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도록 하였음(제3항).

○ 안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은 시장이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공공구매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매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항),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 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 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매뉴얼을 출연기관 등과 시 보조사업 기관·단체,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 배포하여 협조 요청(제2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임.

- 출연기관 등과 50명 이상 사업장에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매촉진과 더불어 홍보 효과도 간접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입법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확대하고자 민간을 포괄하는 '50명 이상 사업장'을 구매촉진·판로지원 권장 대상에 추가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노력 및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의무구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업무매뉴얼 작성과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는 것으로 지역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대구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조례안의 내용은 관계 규정상 적법하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조례안 조문상 '50명 이상 사업장'의 범위가 명확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표현과 같이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산하 출연기관 등과 5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요청과 매뉴얼 배포 등을 적극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판로지원법」 등 관계 법령과 본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비율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대구시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실적(공공구매종합정보망)****1.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총구매액(A)					중소기업제품 구매액(B)					(B/A) × 100
	소계	물품 (①)	공사 (②)	용역 (③)	일반 (④)	소계	물품 (⑤)	공사 (⑥)	용역 (⑦)	일반 (⑧)	
2020	436,694	148,037	196,113	90,049	2,495	411,461	134,304	194,746	81,413	998	94.2
2021	426,989	134,401	198,136	91,797	2,655	335,455	105,295	155,456	73,835	869	78.6

2.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물품 (일반포함) 구매액(A)	기술개발제품 구매액(B)	[(B+C)/A] × 100
2020	135,302	31,048	22.9
2021	106,164	32,790	30.8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p>○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50명 이상 사업장’ 부분에 대한 입장과 기술 개발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상위법과 달리 20%로 정한 이유는?</p>	<p>○ ‘50명 이상 사업장’ 부분은 검토보고서의 검토 내용과 같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며, 의무구매비율 20%는 상위법에서 15%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고, 중소기업 육성 측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임.</p>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본문 중 “50명 이상 사업장”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본문 중 “50명 이상 사업장”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정안	수정동의안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은 고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연기관 등”이라 한다) 및 <u>50명 이상 사업장</u>에 대구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p> <p>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p> <p>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u>50명 이상 사업장</u>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 한다) 및 <u>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u>에 ----- -----.</p> <p>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p> <p>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 -----, <u>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u>에 ----- -.</p> <p>③ (개정안과 같음)</p>

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50명 이상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상
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
는 사업장 등에 -----
-----.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한다)에”를 “한다) 및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우선구매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3(업무처리 매뉴얼)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구매 제품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

고, 업무처리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시가 설립한 출연기관 등, 대구시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지역 공공기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국가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6., 2017. 7. 26., 2017. 11. 2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3. 30., 2017. 7. 26.,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2017. 11. 28.>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

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하고,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⑤ 제4항에 따른 사전 수요 검토, 중소기업 참여방안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6., 2017. 7. 2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 중 내자(內資)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구매를 의뢰한 계약과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되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별 연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5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사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8. 7.>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2. 물품별·공사별·용역별 구매목표액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7. 7. 26., 2020. 2. 18.>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구매실적(제품의 구매실적이 처음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2. 전년도 공사의 구매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여 고시한 제품의 제품별 직접 구매실적

제12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 ③ 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사업목적상 또는 물품구매의 특성상 그 비율을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2020. 2. 18.>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공기관별 연간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 ⑤ 공공기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대상 품목(규격을 포함한다), 계약방법 및 계약금액 등 우선구매조치를 한 내용을, 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구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6. 1. 12.,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구매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1. 12., 2017. 7. 26.>
- ⑦ 법 제1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 7. 6.>